

目 次

1.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————— 21
2. 횡계도시기본계획변경에따른평창군의회의견청취안 26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117

제출년월일 : 1997. 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제안이유

환경기초시설 (평창읍·미탄면쓰레기소각시설, 미탄면오수처리장) 기능인력의 정원승인에 따른 읍·면의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평창읍에 쓰레기소각시설 관리 기능인력 [지방기능직8등급 (난방원)] 1인 순수 증원(안제2조 제5호)
- 나. 미탄면에 쓰레기소각시설 및 오수처리장시설 관리 기능인력 [지방기능직8등급(전기원)] 2인 순수 증원(안제2조 제5호)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5호중 "237"을 "240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평창군의 본청·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본 청 : 235 명 2. 의회사무과 : 11 명 3. 직속기관 : 135 명 4. 사 입 소 : 8 명 5. 유·면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: <u>237</u> 명 	<p>제2조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읍·면(그 출장소를 포함한다): <u>240</u> 명


강 원 도

우 200-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/ (0361)54-2011(교 2224) / 담당 김 왕 기

문서번호 자치 12200-1870
 시행일자 '96. 12.24.(5년)
 경유
 수신 평창군수
 참조 내무과장

선결	공수	김왕기	지시	
접	일자 시간	1996.12.26	결	부러우
수	번호	13962	재·공	과장 김왕기
처리과	내무과		제장	김왕기
담당자	김삼국		랄	

제목 환경기초시설(신규시설) 관리 정원 승인

1. 귀군 12200-2202('96.9.19)호 관련 및 내무부 자치 12200-1087('96.12.12)호의 이첩입니다.
 2. 위호로 승인신청한 환경기초시설(신규)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(정원)을 따로 붙임과 같이 승인하오니 관련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- 붙임 : 승인서 1부 

강 원 도 지

내무부



機構・定員 承認書

평창군 환경기초 신규시설 정원

기구명	직위(직급)	정원	비고
○ 평창읍	지방기능직8등급 (난방)	1명	쓰레기 소각 시설관리 인력
○ 미탄면	지방기능직8등급 (전기)	1명	쓰레기 소각 시설관리 인력
○ 미탄면	지방기능직8등급 (전기)	1명	오수처리장 관리 인력
계		3명	

※ 정원 시행일 : 조례 공포일

———— 이하 여백 ————

횡계도시기본계획 변경에따른
평창군의회의견청취(안)

의안 번호	17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2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1. 제 안 이 유

1987. 11. 29 건설부로부터 승인되어 평창군 제22호(88.3.26)로 고시된 횡계도시기본계획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위해 횡계5리 문화마을조성사업 예정지구와 차항리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재정비하기 위함.

2. 법 적 근 거

-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(도시기본계획의수립) 제2항
 (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할 경우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후 제68조 규정에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함)

3. 주 요 골 자

가. 도시기본계획의 개요

1). 시간적 범위

가). 계획목표년도 : 2016년

나). 계획목표인구 : 21,000명

2). 공간적 범위

구 분	면 적(km ²)	비 고
도시기본계획구역	6.597	
당 초 구 역	6.51	
확 장 구 역	0.087	

3). 내용적 범위

가). 장기적 도시개발 전략과 개발방향 제시

나). 도시공간구조 및 정주환경의 질적 수준에대한 지침

나. 분야 별 계획

1). 토지이용계획

(단위:km²)

구 분	기 정	변 경	구성비(%)	비 고
	면 적	면 적		
합 계	6.51	6.597	100	증 0.087
주거지역	0.914	1.331	20	증 0.417
상업지역	0.2	0.244	4	증 0.044
공업지역	0.035			감 0.035
녹지지역	5.361	5.022	76	감 0.339

가). 주 거 지

- 문화마을 조성사업을위해 도시기본계획구역을 확장
- 황계초등학교 부근의 토지이용을 현실화
- 도시기본계획구역인 차항리일원을 도시구역으로 편입하여 개발촉진

나). 상 업 지

- 기존상업기능을 보완하기위해 주변지역을 확장
- 용평리조트와의 연계발전을 위해 황계5리 주변지역에 상업지역 보완

다). 공 업 지

- 고원관광도시로의 부각으로 공업지역을 관광지역에 맞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

2). 교통망 계획도

가). 광역 교통

- 고속도로 (B = 40M)
- 영동고속도로 4차선 및 선형변경

- 지역간도로 (B = 25M)
 - 진부 ~ 강릉간 지방도 456호가 중심시가지를 동서로 연결하여 간선 도로담당 (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의 4차선 확장 및 선형일부 변경)

나). 도시 내 교통

- 주간선도로 (B = 20M)
 - 도시내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종횡축 도로망체계 구성
- 보조간선도로 (B = 12~15M)
 - 주간선도로 기능을 보완하는 도로망 형성

3). 공원 계획

가). 기본 방향

- 생활권계획과 부합되는 도시공원을 확보하여 생활권내 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
- 시가지내 분산적으로 계획되어있는 공원녹지를 하나로 통합

나). 공원 녹지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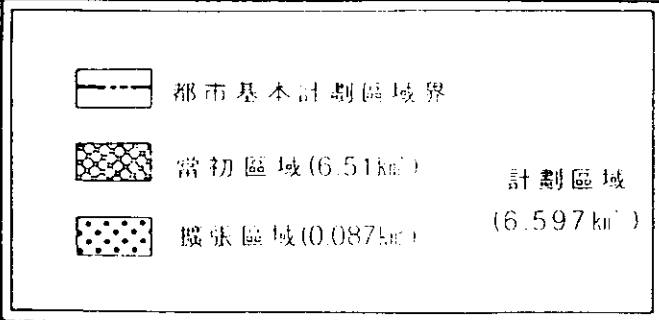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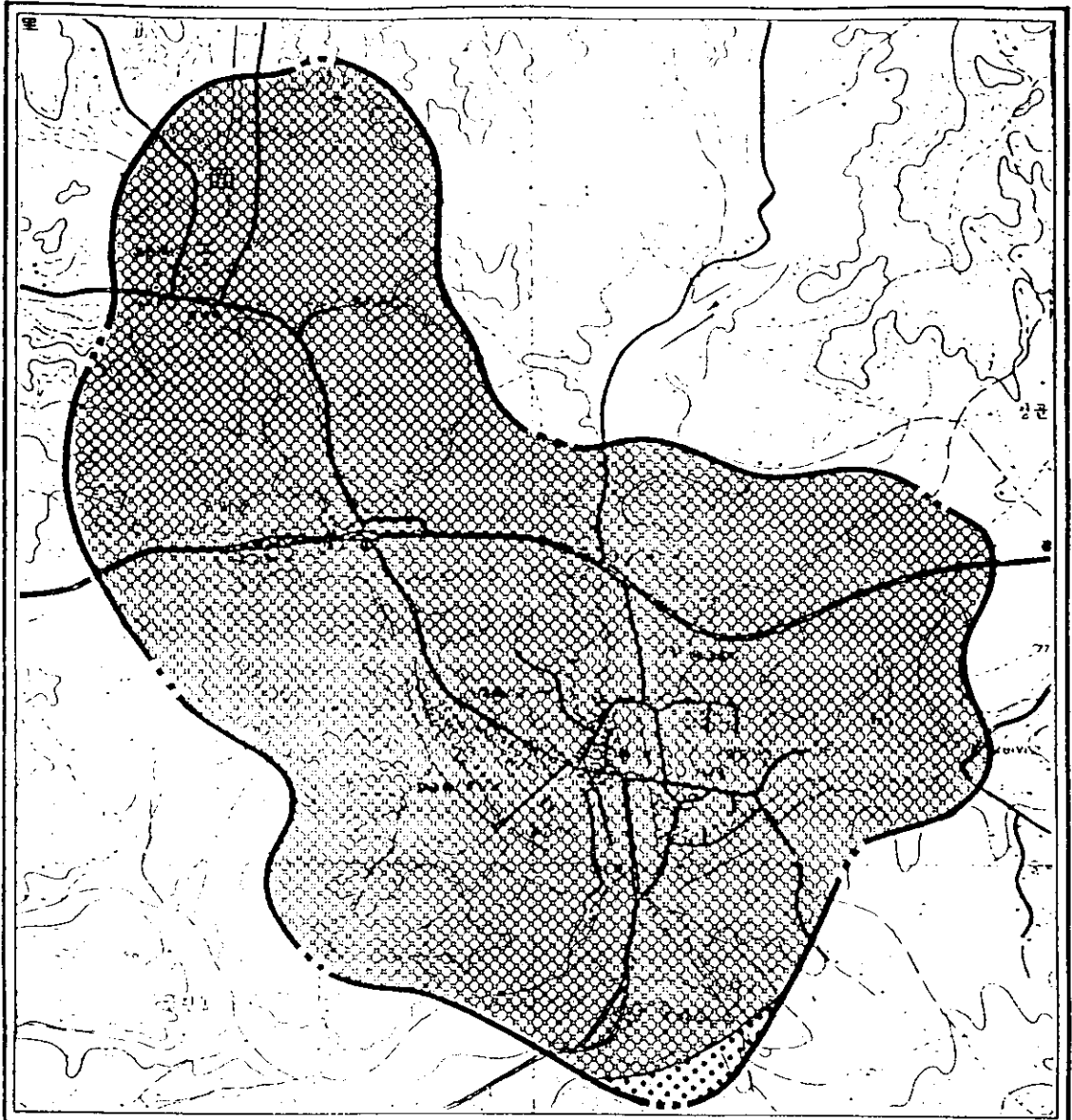
(단위 : m²)

구 분	기 정		변 경		비 고
	개소	면 적	개소	면 적	
합 계	9	1,245,800	4	845,000	
도시공원	7	1,039,000	3	649,000	
완충녹지	1	196,500	1	196,000	고속도로변(B=30M)
경관녹지	1	10,300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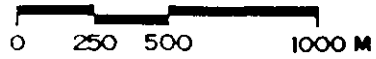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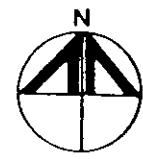
다. 주민 공청회 개최

- 일시 및 장소 : 1996. 12. 19 14:00 대관령신용협동조합 2층 회의실
- 주 재 : 군 수
- 토 론 자 : 강원대 김남각교수, 강릉대 최창의교수
 번영회 안승준회장 및 지역주민 40~50명
- 제출된 의견 : 불임 참조

都市基本計劃區域圖



橫溪 都市基本計劃



지역 주민의 증점 의견

의견 처리 방안

의견제출자	의견 내용	의견 처리 방안	결론
번영회장 (안승준)	· 상업지역내 횡계 중.고등학교를 다른지역으로 이전 요망	· 도교육청에서 학교이전 계획의 수립이 전제로 되어야하나 현재로는 이전계획이 없는 상태이므로 반영 불가	반영불가
주민 (임상열)	· 관광특구에 대한 지정검토 요망 · 현재 원종장일대를 녹지로 구성시 동서남북의 균형있는 녹지체계로 구성되며 대체되는 지역을 횡계 3,5리 지역으로 유도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줄수 있도록 요망	· 관광특구지정은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, 금융지원등에 대한 특례사항이므로 도시기본계획상의 지구로는 반영할 사항이 아님 ·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원종장일대를 녹지지역으로 결정하고 대체지역으로 횡계3,5리 방향쪽으로 주거지역을 결정하도록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	반영 반영
주민 (이대영)	· 용평리조트로 들머리는 차선오른편의 주거지역을 다른지역으로 변경요망(감자원 종상 일대)	· 상기항목과 동일	반영
용평시설관계자 (오학수)	· 기본계획상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 선수보조원숙소를 건축예정으로 지역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지역으로 결정요망	· 현재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의 면적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자연공원을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반영불가	반영불가
주민 (목찬균)	· 차항지역의 주거지역을 연결하여 I.C를 통해 횡계로 진입하는 주변에 민박및 숙박시설이 들어설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	· 두지역을 연결하는 용도지역지정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생활에 이익이 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	반영

의견제출자	의견내용	의견처리방안	결론
전 문 가 (김남각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황계시가지 입구 상업도로변에서 지역개발시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변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황계진입부분 도로변의 상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대체지역으로 상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반영 	반영
전 문 가 (최창의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도시의 발전추세를 반영하여 도시계획구역을 기존시가지와 리조트를 접근시킬 수 있도록 도시지역결정이 중요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상기항목과 동일 	반영